

교원의 대학원 학과 소속에 관한 지침

2014. 11. 1. 제정

2020. 3. 1. 개정

주무부서 : 대학원지원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중앙대학교(이하 “본교”) 교원의 일반대학원 일반과정 학과 및 학과간협동과정 학과의 소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 상) 대학원 일반과정 학과 및 학과간협동과정 학과에 소속될 수 있는 대상은 본교 전임 교원 및 비전임 교원으로 한다.

제3조(소속 학과 기준) 교원은 본교 학부 학과(부)를 기준으로 대학원 일반과정 학과에 소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 3. 1.>

1. 일반과정 학과에 소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과간협동과정 학과에 소속 가능
2. 일반과정 학과에 소속된 교원은 추가로 1개의 학과간협동과정 학과에 소속 가능
3. 일반과정 학과에 소속되지 않은 교원은 2개의 학과간협동과정 학과에 소속 가능
4. 국가과제 수주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개 학과에 소속 될 수 있음

제4조(수업 참여) 교원의 대학원 소속 학과에는 제한이 있으나, 소속되지 않은 학과에서도 수업 참여는 가능하다.

제5조(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